

신기술 (특허공법) 사용협약서

- 신기술(특허공법) 명 : 초기우수 처리장치
 -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 제10-0955909호
- 발주기관(갑) : 경기도시공사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공사명 : 고덕국제화지구 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1공구)
-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을) : (주)한국엔피기술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고덕국제화지구 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1공구)에 대하여 “갑”은 발주기관으로서 “을”은 신기술 (특허공법) 보유자로서 위 공사에 해당 신기술 · 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수급자와의 기술사용) 이 협약에 따라 “을”은 위 공사의 “낙찰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갑”과 “낙찰자”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3조(사용범위) ① 이 협약은 위 공사 중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는 설계서(설계내역서 포함)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4조(하도급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을”이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을”은 하도급 범위에 대하여 적정한 공사금액(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설계금액(제잡비포함)에 65.6%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을”이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갑”이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적인 시공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13년 1월 일

“갑” 【발주기관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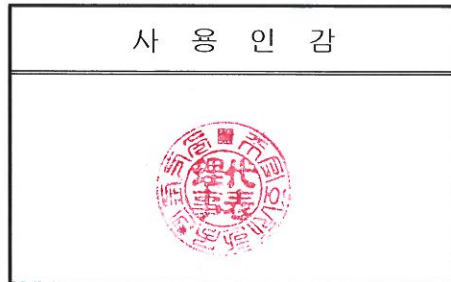
경기도시공사 사장 [인]

“을”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

(주) 한국엔피기술 [인]



사 용 인 감 계



아래 내용과 관련 사용할 인감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며, 위 인감의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폐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제 출 처 : 경기도시공사

사용용도 : 고덕국제화지구 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중
초기우수 처리장치 특허공법 사용협약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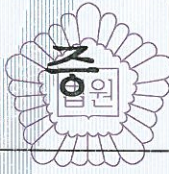
2013 . 01 . 11 .

위 제출인 서울시 삼전동 73-5 S&J빌딩 202호
주식회사 한 국 엔 피 기 술
대표이사 조 배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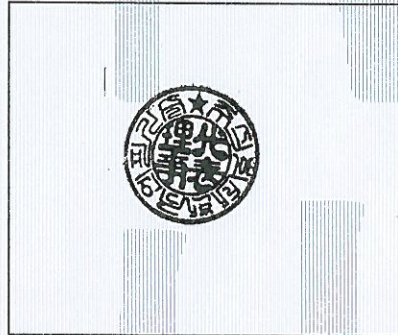


※ 첨 부 : 1. (법인)인감증명서 1통.

인 감 증 명 서



법인등록번호 : 110111-3093046



상 호 : 주식회사 한국엔피기술

본 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73-5 에스엔제이빌딩 2층 202호

대표이사 조배기

(681008-1019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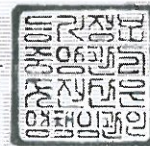
관할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이 인감은 등기소(과)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3년 01월 11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수수료 1,000원 영수함.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인감증명서발급 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 QANV-MIGB-OFE6

10403530141013191003311102241402B1E8C3E6B1C719750215 10

- 1/1 -



특 허 제 10-0955909 호
(PATENT NUMBER)

출원번호
(APPLICATION NUMBER)

제 2009-0101657 호

출원일
(FILING DATE:YY/MM/DD)

2009년 10월 26일

등록일
(REGISTRATION DATE:YY/MM/DD)

2010년 04월 26일

발명의명칭 (TITLE OF THE INVENTION)

초기우수 처리장치

특허권자 (PATENTEE)

주식회사 한국엔피기술(110111-3*****)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2길 8, 에스엔제이빌딩 2층 202호 (삼전동)

발명자 (INVENTOR)

최진낙(581220-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28, 한산아파트 103동 905호 (일원동)

위의 발명은 「특허법」에 의하여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ATENT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12년 07월 27일



특 허 청

COMMISSIONE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연차등록료 납부일은 설정등록일 이후 4년차부터 매년 04월 26일까지이며 등록원부로 권리관계를 확인바랍니다.

원본대조필





특허등록원부

특 허 번 호	제 0955909 호
---------	-------------

[권 리 란]

표시번호	등 록 사 항			
1번	출원연월일	2009년 10월 26일	출원번호	2009-0101657
	공고연월일	2010년 04월 30일	공고번호	-
	특허결정(심결)연월일	2010년 04월 23일	청구범위의 항수	5
	유 별	C02F 1/00		
	발명의 명칭	초기우수 처리장치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29년 10월 26일		
	2010년 04월 26일 등록			

[특 허 료 란]

제 01 - 03 년분 (2010.04.26 ~ 2013.04.26)	금 액	72,000 원(소기업)	2010년 04월 27일 납입
--	-----	---------------	------------------

[특 허 권 자 란]

(최종권리자)	
주식회사 한국엔피기술 (110111-3*****)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2길 8, 에스앤제이빌딩 2층 202호 (삼전동)	
순위번호	등 록 사 항
1번 (등록권리자)	미라클워터 주식회사(110111-4*****)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1길 6-27 (수서동) 2010년 04월 26일 등록
1번 부기1	(등록권리자의 표시변경등록) 접수 연월일 : 2010년 07월 12일 접수 번호 : 2010-0012610 변경 권리자 : 미라클워터 주식회사(110111-4*****)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처빌 1923호 변 경 사 항 변경전 :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처빌 1813호 변경후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처빌 1923호 등 록 원 인 : 주소변경(경정) 2010년 07월 12일 등록
1번 부기2	(등록권리자의 표시변경등록) 접수 연월일 : 2011년 01월 19일 접수 번호 : 2011-0000764 변경 권리자 : 미라클워터 주식회사(11011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17-3 변 경 사 항 변경전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처빌 1923호 변경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17-3 등 록 원 인 : 주소변경(경정) 2011년 01월 19일 등록
1번 부기3	(도로명주소경정등록) 관 리 번 호 : 2011-5278616 도로명주소법제20조에 의한 등록원인일자 : 2011년 12월 31일 등 록 원 인 : 지번 주소의 도로명 주소 변경 등 록 내 용 : 도로명주소법제20조에 의거, 순위번호1번의 권리자 미라클워터 주식회사의 주소를 직권경정함.

원본대조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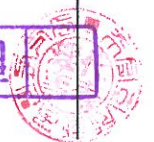
	변 경 사 항 변경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17-3 변경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1길 6-27 (수서동) 2012년 01월 01일 등록
2번 (권리의 전부이전등록)	접수 연월일 : 2012년 07월 17일 접 수 번 호 : 2012-0351923 등록 의무자 : 미라클워터 주식회사(110111-4*****)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1길 6-27 (수서동) 등록 권리자 : 주식회사 한국엔피기술(110111-3*****)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2길 8, 에스앤제이빌딩 2층 202호 (삼전동) 등 록 원 인 : 양도 등록의 목적 : 권리의 전부이전등록 2012년 07월 17일 등록

[통 상 실 시 권 자 란]

순위번호	등 록 사 항
1번	(통상실시권의 설정등록) 접수 연월일 : 2010년 07월 12일 접 수 번 호 : 2010-5132101 등록 의무자 : 미라클워터 주식회사(110111-4*****) 서울특별시 강남구 방고개로1길 10, 현대벤처빌 1923호 (수서동) 통상실시권자 : (주) 한국엔피기술(110111-3*****)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2길 8, 에스앤제이빌딩 2층 202호 (삼전동) 등 록 원 인 : 설정계약 통상실시권의 범위 기 간 : 2010년 04월 26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 역 : 대한민국 전역 실시내용 : 특허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 2010년 07월 12일 등록
1번 부기1	(도로명주소경정등록) 관 리 번 호 : 2011-5278616 도로명주소법제20조에 의한 등록원인일자 : 2011년 12월 31일 등 록 원 인 : 지번 주소의 도로명 주소 변경 등 록 내 용 : 도로명주소법제20조에 의거, 순위번호1번의 권리자 (주) 한국엔피기술의 주소를 직권경정함. 변 경 사 항 변경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73-5 에스앤제이빌딩 2층 202호 변경후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2길 8, 에스앤제이빌딩 2층 202호 (삼전동) 2012년 01월 01일 등록
1번 부기2	(도로명주소경정등록) 관 리 번 호 : 2011-5278616 도로명주소법제20조에 의한 등록원인일자 : 2011년 12월 31일 등 록 원 인 : 지번 주소의 도로명 주소 변경 등 록 내 용 : 도로명주소법제20조에 의거, 순위번호1번의 의무자 미라클워터 주식회사의 주소를 직권경정함. 변 경 사 항 변경전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처빌 1923호 변경후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방고개로1길 10, 현대벤처빌 1923호 (수서동) 2012년 01월 01일 등록

이 등본(초본)은 등록원부와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제 000091804 호)

원본대조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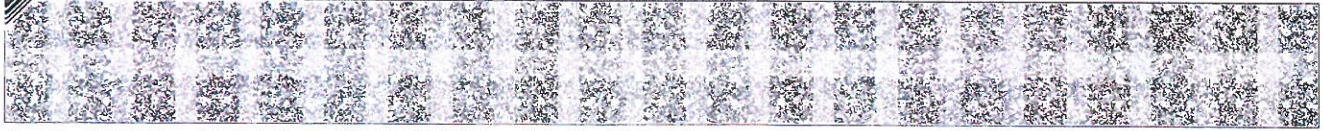


2012년 07월 24일

특 허 청



1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특허넷-온라인제증명발급' 메뉴를 통해 발급번호 또는 문서하단의 바코드로 내용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단, 발급번호를 통한 확인은 90일까지 가능합니다.

원본대조필

